

#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#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의안<br>번호 |  |
|----------|--|

제출연월일 : 2014. . .  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가. 상표사용권이 취소된 경우의 재사용 신청 제한기간을 단축하여 상표 사용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 확보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상표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다시 신청 불가능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(안 제16조제2항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1)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7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조례 제 호

## 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”을 “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6조(상표사용권의 취소) ①<br>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6조(상표사용권의 취소) ①<br>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<br>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<u>취소된</u><br><u>날부터 2년 이내에는</u> 제12조 규<br>정에 의한 상표사용 신청을 할<br>수 없다. | ② -----<br>----- <u>취소된 날</u><br><u>부터 1년 이내에는</u> -----<br>-----<br>-----. |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

제37조(지식재산권 등의 보호) ① 정부는 농어업 유전자원, 영농·영어·양식기술, 전통 농법·어법, 전통 식품의 생산방법, 상표, 지리적표시, 동식물 신품종, 생명공학기술 등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향토산업·농어촌지역 특화산업 등의 보호·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.

| 소관 실·과      |       | 선산출장소<br>유통축산과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입<br>안<br>자 | 과 장   | 유 영 식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담 당   | 김 종 성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담 당 자 | 김 경 호<br>(480-5812) |